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시허가, 규제특례 중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등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9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임시허가, 규제특례 중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등(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2
※ 참고자료: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대상 법률 현황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임시허가, 규제특례 중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등(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고, 특히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압류가 불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현행	개정안
<u><신설></u>	<u>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u> <u>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u> <u>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u>

나. 점토의견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생명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¹⁾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며,²⁾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압류도 가능함.³⁾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 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사업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채권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4)에서 요구하는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마련한 규제특례 관계 법률 일괄 정비안에 기반하고 있음([참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대상 법률 현황).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함)와 임시허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실증특례⁵⁾와 임시허가⁶⁾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5) “실증특례”는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며,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임

6) “임시허가”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승인 등을 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일종으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증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연구개발특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제샌드박스로 인하여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 등 인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볼 여지가 있는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도입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둘째, 이 법에 따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채권 간 형평성이 어긋나지는 않는지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정계좌 입금·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등에서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취지로 급여 등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7)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

‘채권 압류 등 금지’와 관련해서는 채권 압류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에서도 인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등에 대하여는 그 보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채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후 략)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후 략)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

다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체납 중인 경우 규제특례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 중 하나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압류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정해서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바,⁹⁾ 다른 법률에 따른 채권들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조세평등주의의 예외로 취급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후 략)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후 략)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9)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17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227

※ 참고자료: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대상 법률 현황(7개)

연번	법률명	조문	소관위원회 심사현황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심사중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의2 제69조의3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3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중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4 제53조의5	
5	「산업융합 촉진법」	제32조의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심사중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조의2 제140조의3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중